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5.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자 (제출일)	심 사 경 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139호)	정부	2024.6.28.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0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6722호)	윤준병의원	2026.2.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2.20.)

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법률 제 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한 자”를 각각 “아니한 자.”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3. ----------아니한 자.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4. ----------아니한 자.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